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9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이수진・김성환・장철민

김현정 • 민병덕 • 최기상

서미화 · 김태년 · 허 영

송옥주 · 신장식 · 김남근

이용우 · 전진숙 · 김 윤

한창민 • 백승아 • 김문수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의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②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③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			
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u>사람</u>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u><신 설></u>	1의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		
	체가 추천하는 사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